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51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박희승 · 박용갑 · 윤준병
김정호 · 안호영 · 정성호
백혜련 · 서미화 · 김태년
전진숙 · 서영교 · 박홍배
서영석 · 이원택 · 이광희
김준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회수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수계획”으로, “회수결과를”을 “회수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 출고량
 3. 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시간
 7.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8.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② 제1항 후단 또는 단서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에게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2.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것
3. 유통 중인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 또는 단서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101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

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5의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영업자

5의4.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u>회수계획</u>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u>회수결과</u> 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 ----- ----- ----- ----- ----- ----- ----- ----- ----- ----- ----- -----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수계획</u> ----- ----- ---- <u>회수계획</u> ----- ----- -----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
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
한

2. 출고량

3. 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
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시간

7.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
치계획

8.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
는 방법

② 제1항 후단 또는 단서에 따
라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신 설>

<신 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에게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2.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것

3. 유통 중인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 또는 단서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 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u>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1. <u>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이 포함된 회수실적</u> 2. <u>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u> 3. <u>재발방지를 위한 대책</u>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⑥ 그 밖에----- ----- -----.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5의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	---

<u><신 설></u> <u>5의2.</u> (생 략) 6. ~ 10. (생 략) ③ ~ ⑤ (생 략)	<u>보완 또는 수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영업자</u> <u>5의4.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u> <u>5의5.</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